

서울고등법원

제 1 2 -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4나202759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24나205182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안진호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재, 유정석, 이태운, 이민걸
피고보조참가인겸독립당사자참가인,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6328 판결
변론종결	2025. 1. 8.
판결선고	2025. 1.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의 2023. 3. 31. 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보수한도승인 결의를 취소한다.

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

- 1) 원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피고의 2023.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보수한도승인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 2) 원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23년도분 임원급여 반환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보조참가 및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 및 항소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피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참가인의 항소제기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

로, 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 및 항소가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에 명백히 적극적으로 저촉되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어긋나는 때에는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인바, 피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이 수령한 2023년도분 임원보수에 대한 법률상 원인의 존부나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임원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바,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여 참가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 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해방지참가를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참가인의 2024. 10. 16.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참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 중 이 사건 안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피고의 2023.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보수한도 승인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원고,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023년도분 임원급여 반환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응소하고 있을 뿐, 원고와 피고가 그들 사이의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명시적으로 참가인의 항소제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해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결국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참가인은,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이사보수한도를 일관되게 5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건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매년 지급되던 임원보수총액이 50억 원을 훨씬 하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결의 중 이 사건 안건 부분은 개개 임원의 보수액을 정하는 데 특별한 영향이 없는 기준이어서 피고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의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진 점, 실제로 지급된 임원보수총액이 위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변경이 없는 한 임원보수 총액한도를 유지한다는 결의를 할 수도 있음에도 매년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의하였는데, 이는 임원보수한도를 매년 달리 설정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가 참가인이 주장하는 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임원보수총액의 한도가 정해지면 참가인 등은 그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실제로 지급된 보수가 이사보수한도를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 규모에 비추어볼 때 이사보수한도를 50억으로 정한 것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2013년 이후부터 이사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일관되게 정해왔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거나 결의가 취소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등의 재량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배광국 박형준